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940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                  |   |
|------------------|---|
| II . 검토 의견 ..... | 2 |
|------------------|---|

## I. 개요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임종특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2. 5.
- (3) 회 부 일 : 2025. 12. 8.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이 아닌 지침에 근거하고 있어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농촌이나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우선지원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농촌 등 취약지역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태내장비의 설치율이 낮고 오작동이 잦으며, 응급관리요원 등 인력 부족과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격차로 인하여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되고 사업의 지속성 확보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 II. 검토 의견

- 개정안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생략)<br><u>&lt;신설&gt;</u> |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br>②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보호조치를 위하여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등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u><br>③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u> |
| <u>&lt;신설&gt;</u>                                   |                                                                                                                                                                                                                                                                                                                                |

<신 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로 정하는 격지·오지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및 응급관리요원 배치기준 마련

2.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3. 그 밖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조치

⑤ -----  
제1항 및 제2항의-----  
-----  
-----  
-----  
-----.

⑥ 제1항 및 제2항-----  
-----  
-----  
-----.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상황에 대응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정보통신망과 연결된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구급대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연락이 가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구조, 구급 활동을 지원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을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동 사업을 통해 노인(독거노인·노인부부·조손가구) 262,364가구, 장애인 12,641가구 등 총 275,005가구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음(2025년 11월 기준).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대상자 현황 >**

(기준: 2025. 11. 30. / 단위: 가구)

| 구 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합 계 (A+B)   | 129,851 | 173,842 | 238,806 | 268,505 | 275,005 |
| 노인(A)       | 121,707 | 164,796 | 227,328 | 256,105 | 262,364 |
| 1인 가구(독거노인) | 121,707 | 164,796 | 227,328 | 153,411 | 196,021 |
| 노인 2인 가구    | —       | —       | —       | 10,775  | 14,161  |
| 조손가구        | —       | —       | —       | 238     | 295     |
| 확인불가        | —       | —       | —       | 91,681  | 51,887  |
| 장애인(B)      | 8,144   | 9,046   | 11,478  | 12,400  | 12,641  |

\* 2023년 7월부터 노인 대상자 범위를 독거노인, 노인 2인 가구, 조손가구로 확대

\* 2024년 2월부터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노인 대상자를 분류(기존 대상자 중 일부는 확인 불가)

\* 시스템상 장애인은 별도 구분값이 없어 1인 가구 여부 등 확인 불가

\* 자료: 보건복지부

□ 동 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4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등에 근거하여 이루

어지고 있는데, 「장애인활동법」에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안전 확인 또는 구조, 구급활동 등의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노인복지법」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sup>1)</sup>.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①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안전 확인 또는 구조·구급활동 등의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1인 가구인 경우
2.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3.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직장·학교생활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신청,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한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응급관리요원이택내장비 모니터링 및 대상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2025년 11월 기준 시도별 1인당 관리장비 수의 평균은 359대이고, 평균보다 관리

1) 「2025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에 해당하는 노인가구로 노인가구, 노인 2인 가구, 조손가구를 규정하고 있음.

장비수가 다소 많은 시도는 8개 시도임. 이들 시도에는 부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등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 시도별 응급관리요원·택내장비 현황 >

(기준: 2025. 11. 30. / 단위: 가구)

| 시도      | 고령인구비율 | 응급관리요원 | 장비 운영<br>대수 | 인당 장비<br>운영 대수 |
|---------|--------|--------|-------------|----------------|
| 계 / 평균  | 21.1   | 766    | 275,005     | 359            |
| 서울특별시   | 20.4   | 8      | 2,041       | 255            |
| 부산광역시   | 25.2   | 47     | 18,193      | 387            |
| 대구광역시   | 22.0   | 34     | 13,806      | 406            |
| 인천광역시   | 18.8   | 18     | 5,919       | 329            |
| 광주광역시   | 18.7   | 20     | 7,073       | 354            |
| 대전광역시   | 19.0   | 26     | 9,733       | 374            |
| 울산광역시   | 18.5   | 16     | 6,246       | 390            |
| 세종특별자치시 | 12.2   | 5      | 1,550       | 310            |
| 경기도     | 17.6   | 101    | 36,249      | 359            |
| 강원특별자치도 | 26.7   | 73     | 25,260      | 346            |
| 충청북도    | 23.0   | 40     | 14,114      | 353            |
| 충청남도    | 23.3   | 66     | 22,778      | 345            |
| 전북특별자치도 | 26.5   | 71     | 26,053      | 367            |
| 전라남도    | 28.4   | 108    | 36,276      | 336            |
| 경상북도    | 27.3   | 61     | 22,616      | 371            |
| 경상남도    | 23.1   | 60     | 22,900      | 382            |
| 제주특별자치도 | 20.0   | 12     | 4,198       | 350            |

\* 음영 표시: 평균 운영 대수(359 대) 초과 지역

\* 자료 : 보건복지부

- 농촌 등 취약 지역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통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11월말 기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85개(37.6%) 지역만 응급관리요원에게 교통비가 지원되고 있음<sup>2)</sup>.
- 개정안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sup>3)</sup>.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에 대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강화 및 노인 대상자 확대 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99

2) 「2025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수당 등

- 지역센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중 시·군·구의 승인을 얻어 각종 수당 등 지원 가능
  - 시·도, 시·군·구 및 법인의 지원 또는 지역센터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 관련 우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자격 수당과 **교통비**, 통신비 등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시·군·구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응급관리요원의 출장 등에 대한 여비, 야간 및 휴일 출동수당, 혹한기·혹서기 발생 대응 수당, 각종 수당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3)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921호, 이성윤의원 대표발의[2025. 6. 18.])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